

- 동서광역철도 내곡지구 경유에 관한 청원 -

검 토 보 고

1. 경 과

- 청 원 자 : 손민상(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청계산로7길 서초포레스
타 502동 1206호) 외 2,238명
- 소개의원
 - 최호정 의원(새누리당, 서초 제3선거구, 기획경제위원회)
- 접수일자 : 2016. 5. 30.
- 회부일자 : 2016. 5. 31.

2. 청원요지

-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논의 중인 동서광역철도의 노선이
현릉로를 통해 내곡지구를 지나 위례-과천 지역을 연결할 수 있도록
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함

3. 소개의원 요지

- 현재,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과천-위례를 잇는 동남권
동서광역철도를 설치하는 것이 검토 되고 있음

- 내곡동 등 현릉로를 경유하는 동서광역철도를 건설할 경우, 새로 건설한 보금자리 지역의 부족한 교통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으며 내곡 보금자리 지구와 염곡사거리의 극심한 교통정체를 해소할 수 있고 최근 매각된 파이시티 부지의 개발, 2018년 이전 예정인 국립의료원과 이에 인접한 양개 R&D 혁신지구의 개발로 인한 인구유입과 증가된 인구의 교통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- 논의 중인 동서광역철도의 노선이 내곡지구를 경유할 수 있도록 서울시 정책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함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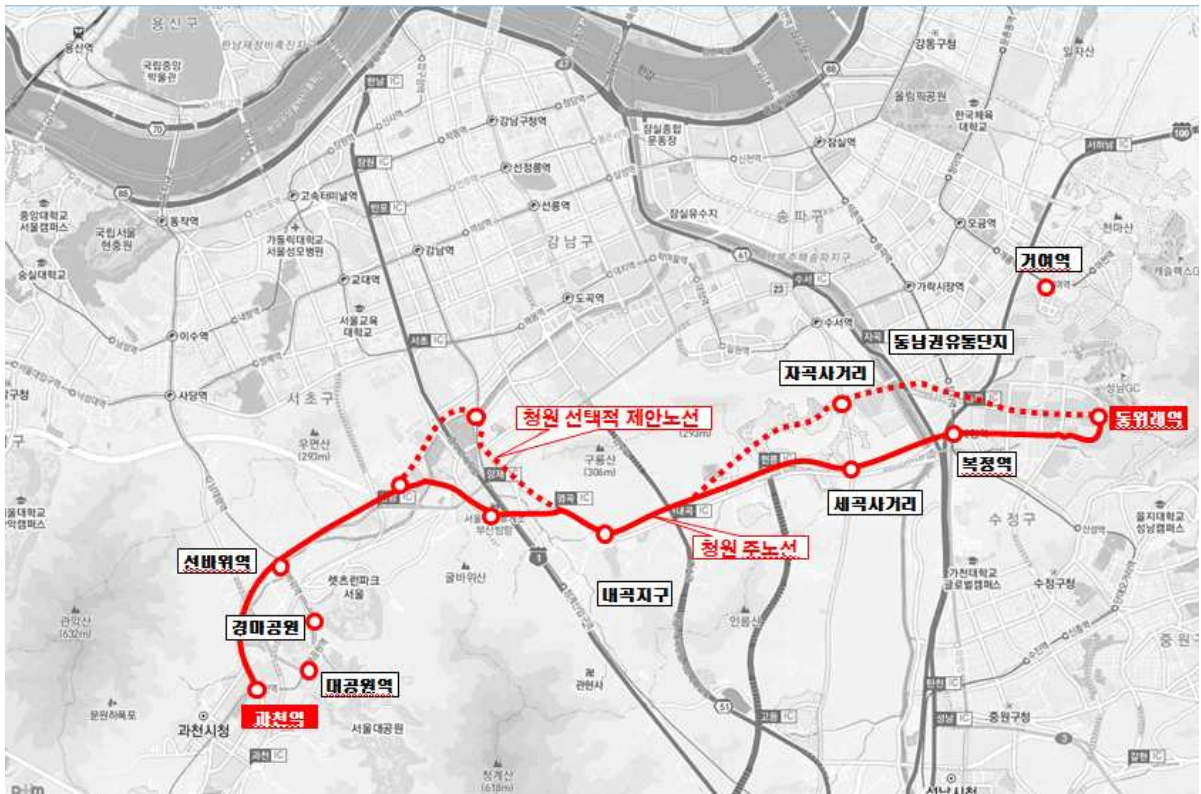
- 서울시장(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) : 검토중
 - 서초구 등 4개 자치구 주관으로 시행하는 위례~과천선의 사전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노선경유지, 역사위치 등에 대해 관련 자치구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가장 합리적인 노선안을 선정할 계획임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김동수)

가. 청원의 개요

- 동 청원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검토 중인 위례~과천을 연결하는 동남권 동서광역철도 노선에 대해 “동위례역을 출발하여 현릉로를 지나 내곡지구를 통과하여 선암IC를 거쳐 과천역에 이르는 주 노선”과 “동위례역을 출발하여 자곡사거리를 거쳐 내곡IC와 선암IC를 지나 과천역에 이르는 선택적 제안 노선”을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임

〈동 청원의 주 노선 및 선택적 제안노선〉



나.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(안) 관련 위례~과천선 추진 현황

-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「철도건설법」 1)에 의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이 가능²⁾한 계획으로서 현재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신규사업 36개 사업 중 1개 사업으로 「위례과천선」 사업이 '16.6.17일 심의·의결되어 '16.6월 하순 중 고시될 예정임³⁾

〈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심의·의결 노선〉

노선명	노선 시종점	연장(km)	총사업비(억원)
위례과천선	북정~경마공원	15.2	12,245

당초 「위례과천선」 사업은 '08.3월 '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'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사업으로 서울시의 타당성 조사 결과 '11.7월 타당성이 부족(B/C 0.94)한 것으로 나타나 '11.12월 감사원으로부터 재검토 통보를 받은 후 다시 서울시가 '14.7월과 '14.12월에 각각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음

1) 「철도건설법」 제4조(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효율적인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(이하 "철도망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2) 「철도건설법」 제4조(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)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망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한다.

3) 철도망 효율성제고 등을 위한 중장기 철도 투자방향 제시 -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('16~'25) 철산위 심의·의결-,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, 2016.6.17.일자 보도자료

〈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관련 서울시 건의노선(안)〉

구 분	노선 시종점	사업규모	총사업비 (억원)	이용수요 (인/일)	B/C	비 고
'14.7월	거여~선바위	연장 16.8km, 정거장 11	13,261	123,471	0.94	'11.7월 동일노선
'14.12월	북정~경마공원	연장 15.22km, 정거장 7	11,393	-	0.95	지자체 요청4)
'14.12월	북정~대공원	연장 12.1km, 정거장 6	8,205	59,531	0.76	표정속도5) 51.6km/h

다. 검토의견

- 동 청원의 주 노선은 “동위례역~세곡동~내곡지구~서초보금자리지구~과천역”에 이르는 노선으로 지역 생활거점을 연결하는 노선 특성상 특히 출퇴근 시간대 충분한 수요확보를 통해 높은 사업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, 대중교통 이용을 통한 세곡동사거리 및 염곡사거리의 교통혼잡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

동 청원의 선택적 제안 노선인 “동위례역~강남보금자리지구~내곡지구~영동1교 교차로~서초보금자리지구~과천역” 구간은 역시 새로운 주거중심지의 연결을 통해 주 노선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수요확보가 가능하고 출퇴근 대중교통 이용을 통한 교통혼잡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

그러나, 시기적으로 볼 때 국토교통부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심의·의결하고 고시를 준비하고 있음에 따라 서울시가 동 청원 노선을 서울시의 정책대안으로 삼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

4) 과천~위례 동서광역철도 추진협의체 : 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, 과천시

5)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4조(광역철도) ① (생략)

3. 표정속도(표정속도,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를 말한다)가 시속 50킬로미터(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시속 40킬로미터) 이상일 것

획 건의할 수는 없는 상황임

- 다만,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철도노선의 시점 및 종점 선정과 총사업비가 주안점임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확정 및 고시함에 따라 서울시는 동 청원 노선을 포함하여 여러 대안 노선에 대한 사업타당성 여부를 적극 검토할 수는 있을 것임
- 한편, 서울시장은 동 청원에 대해 서초구 등 4개 자치구 주관으로 시행하는 위례~과천선의 사전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노선경유지, 역사위치 등에 대해 관련 자치구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가장 합리적인 노선안을 선정할 계획으로 '검토중' 의견⁶⁾을 제출하였음

6) 교통정책과-11434(2016.6.7.)